

2008.9.12(금) 11:00

第130回 忠州市議會(臨時會)

第5次 本 會 議

其他案件審查報告書

Ⅰ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
- (주)신니개발 K-M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

總 務 委 員 會

其他案件審査報告書

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㉠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	2008.9.2	2008.9.3	2008.9.8	2008.9.8	회 계 과 장

2. 제안설명요지

㉠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

1) 제안이유

2008년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(주)신니개발 K-M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

교환대상 재산 개요

구 분	공유재산(시유림)	(주)신니개발	비고
위 치	· 신니면 대화리 11필지 · 가금면 용전리 3필지	용산동 157번지의 1필지	
면 적	178,823 m ²	3,807m ²	
공시지가 재산가액	296,261천원	859,934천원	
감정평가액	1,176,924천원	1,153,521천원	
교환차액	23,403천원(신니개발 부담금)		

□ 사업의 필요성

- (주)신니개발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 용산동 157의 1 필지의 회사소유 재산과 충주시 공유재산인 신니면 대화리 산11-1번지 외 13필지를 교환요청 함에 따라
- 시유지를 골프장 조성부지로 교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시유지 인근의 토지를 교환 확보하여 재산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①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

가. (주)신니개발 K-M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교환

- 본 건은 신니면 대화리 산11번지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K-M골프장 조성 예정지내에 있는 시유지 11필지와 가금면 용전리 산 18-12번지 일원에 있는 시유지 3필지 등 총 14필지 178,823m²의 토지를 용산동 157번지 일원의 구 전매청부지 3,807m²와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임.

- 사유지인 산지의 임야를 매각하여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,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용산동 157번지 일원의 토지는 이미 2008년 3월 5일 제 1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확보한 바 있는 용산동 체육공원 부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시의 입장에서라도 활용가치 높은 부지라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①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

◎질의 : 없음

5. 심사결과

①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① 2008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6차)안 1부. 끝.